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73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은 학원의 설치·운영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성범죄자경력 자료에 대해서만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자료에 대해서도 비치를 하도록 규정함.

2. 주요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자료에 대해서 비치를 하도록 신설함(안 제2조제7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직원, 강사, 임시교습자 등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생략)</p> <p>① ~ ⑥ (생략)</p> <p>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p>	<p>제2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현행과 같음)</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직원, 강사, 임시교습자 등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p>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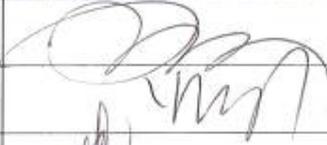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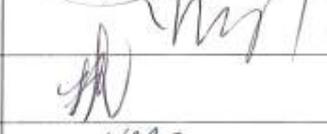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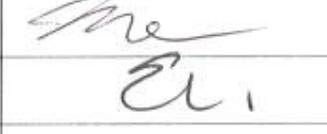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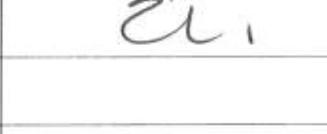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김민석		
2	박성준		
3	김민석		
4	권원희		
5	황인호		
6	구이재		
7	송민호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